천원주택(전세임대 - 신혼·신생아Ⅱ 유형) 입주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( ) -	집전화( ) -	
혼인 및 출생신고일	① 혼인신고일(재혼포함)		년 월 일	
	② 자녀 출생신고(입양신고)일(주민등록등본 기준)		년 월 일	
신청순위	[ ] **1순위** [신생아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)]			
	[ ] **2순위** [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/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]			
	[ ] **3순위** [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]			
	[ ] **4순위** [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]			
주택 및 자산현황	[ ] **무주택**	[ ] **자산** (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)		
	<작성요령 및 유의사항> 1.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. 2.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.			

위와 같이 **천원주택(전세임대 - 신혼·신생아Ⅱ 유형)**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

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(갱신계약 포함)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.

□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

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,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평가항목	평가요소	배점	평 가	평 점
① 수급자,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	가.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나. 차상위계층	3점 2점	( )	( )점
② 자녀의 수 (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,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) * 단,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	가. 3인 이상 나. 2인 다. 1인	3점 2점 1점	( )인	( )점
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*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* 발급관리번호로 발급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상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합니다.	가. 24회 이상 납입 나.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.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	3점 2점 1점	( )회	( )점
④ 인천광역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* 공고일 현재까지의 연속 거주기간 산정	가. 5년 이상 나. 3년 이상 5년 미만 다. 3년 미만(타지역은 가점 없음)	3점 2점 1점	( )개월	( )점
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* 배우자가 지적·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(기존 제3급 이상의)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	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	2점	(O, X)	( )점
⑥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(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도 포함) *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해당없음	65세 이상(1960.04.30. 이전 출생)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*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	1점	(O, X)	( )점
			총 점	( )점